

보도 시점 2026. 6. 25.(목) 12:00 배포 2026. 6. 25.(목) 10:00

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근로·자녀장려금 1조 8천억 원 지급

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·자녀장려금 6월 25일 일괄 지급, 가구당 최대 330만 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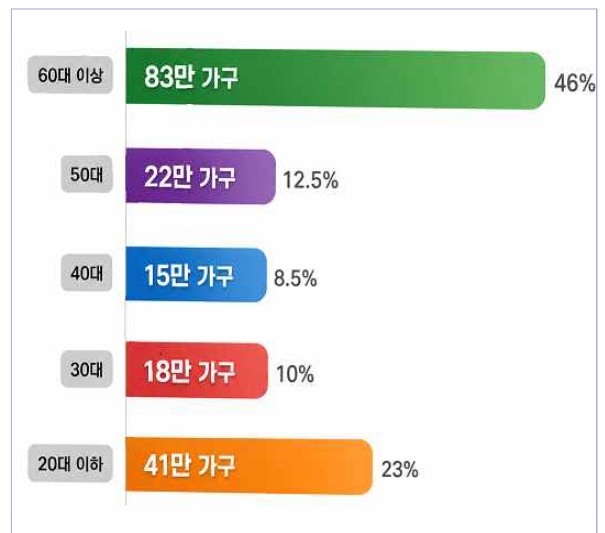
- 국세청(청장 임광현)은 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가구의 생활 안정과 민생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귀속 하반기 장려금을 6월 25일(목) 일괄 지급한다.
-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·자녀장려금*은 근로소득만 있는 192만 가구를 대상으로 1조 8,087억 원을 지급하며, '25.12월 기지급한 상반기분 5,533억 원을 포함하면 연간 지급 규모는 총 204만 가구, 2조 3,620억 원이다.
- * (근로) 179만 가구, 1조 6,475억 원, (자녀) 13만 가구, 1,612억 원
- 고령화와 가족 구조 변화에 따른 1인 가구 증가로 가구 유형 중 단독 가구가 126만 가구로 70%이고,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83만 가구로 근로장려금 전체 지급 인원의 46%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.

< 2025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수급현황 >

가구 유형별(25년 귀속 하반기분)



연령대별(25년 귀속 하반기분)



- 신청자 가구 구성원 중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분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8월 27일에 심사하여 지급할 예정이다.
- 아울러, 2025년 귀속분 장려금 지급대상이나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 1일까지 홈택스, 자동응답시스템(1544-9944) 등을 통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. 다만, 연간 산정액의 5%를 감액하고 95%만 지급한다.
-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방법에 따라 신청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되고, 현금 지급 대상자는 신분증과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가까운 우체국에 제시하면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.
 - * 환급금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다.
- 장려금 심사 결과는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하였으며, 장려금 상담센터 (1566-3636), 자동응답시스템(1544-9944), 홈택스(PC, 모바일)에서도 지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.
-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장려금 전용상담센터(☎1566-3636)를 통해 안내 (평일9시~18시) 받을 수 있다.
-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제적 약자인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실질소득 지원을 확대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복지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.

| | | | |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<총괄> | 복지세정관리단 장려세제과 | 책임자 | 과 장 | 정상수 (044-204-3801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| 이주영 (044-204-3827) |
| <협조> | 정보화관리관 홈택스2담당관 | 책임자 | 과 장 | 이용선 (044-204-2551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| 정명숙 (044-204-2592) |



참고 1 근로·자녀장려금 제도 개요

- ◆ 근로장려금(EITC) : 저소득 근로자·자영업자·종교인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유인 및 실질소득 지원
- ◆ 자녀장려금(CTC) :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근로자·자영업자·종교인 가구에 자녀 1인당 50~100만원을 지급하여 자녀 양육비 지원

신청요건

| 소득요건 (부부합산) | 근로장려금 | | | | 자녀장려금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|
| | 가구유형 | 단독 가구 | 홀벌이 가구 | 맞벌이 가구 | |
| | 총소득기준금액 | 2,200만원 | 3,200만원 | 4,400만원 | |
| 최대지급금액 | 165만원 | 285만원 | 330만원 | 50~100만원 |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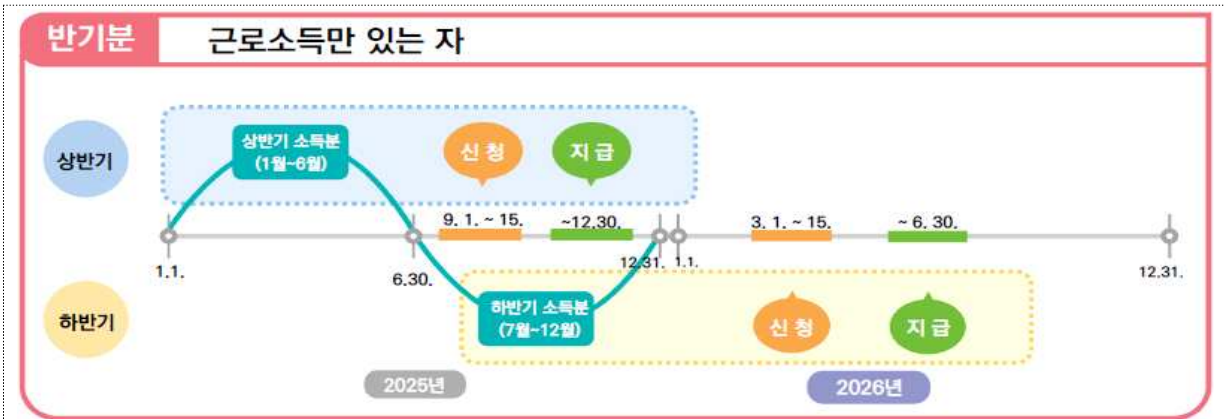
| | |
|-----------------|---|
| 재산요건 (가구원합산) | 소득발생연도 6월 1일 현재,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2.4억 원 미만 |
|-----------------|---|

지급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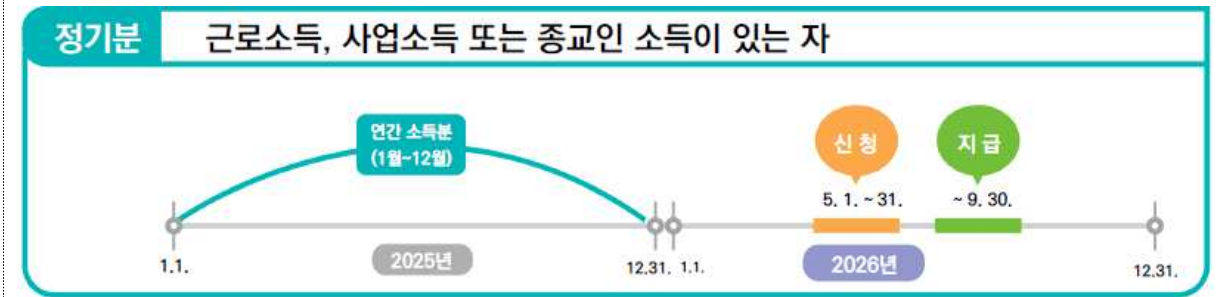
(만가구, 억원)

| 귀속연도 | '08 | '20 | '21 | '22 | '23 | '24 |
|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가구 | 59 | 497 | 499 | 478 | 518 | 503 |
| 금액 | 4,537 | 50,792 | 49,837 | 52,289 | 56,579 | 55,467 |

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정('25년 귀속)



* (근로) 상반기 35% 지급, 하반기 65% 지급, (자녀) 하반기 100% 지급



* 법정지급기한은 9.30.이나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8월 말(8.27.) 지급

참고 2 '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·자녀장려금 지급 현황

□ 근로·자녀장려금 지급결과

(만가구, 억원)

| 귀속 | 합 계 | | 근로장려금 | | 자녀장려금 | |
|------|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
| | 가구 | 금액* | 가구 | 금액 | 가구 | 금액 |
| '25년 | 192 | 18,087 | 179 | 16,475 | 13 | 1,612 |
| '24년 | 198 | 18,386 | 183 | 16,604 | 15 | 1,782 |
| 증감 | △6 | △299 | △4 | △129 | △2 | △170 |

* (근로) 연간산정액의 65% 하반기 지급, (자녀) 하반기 100% 지급

□ 연령별·가구유형별 지급대상

(만가구)

| 가구유형 | 20대이하 | 30대 | 40대 | 50대 | 60대이상 | 계 |
|------|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|-----|
| 단독 | 40 | 14 | 8 | 13 | 51 | 126 |
| 홀벌이 | 2 | 5 | 11 | 10 | 27 | 55 |
| 맞벌이 | 0 | 2 | 1 | 2 | 6 | 11 |
| 계 | 42 | 21 | 20 | 25 | 84 | 192 |

참고 3 '25년 귀속 연간 근로·자녀장려금 지급 현황

□ 정기분을 제외한 상·하반기분 근로·자녀장려금 지급결과

(만가구, 억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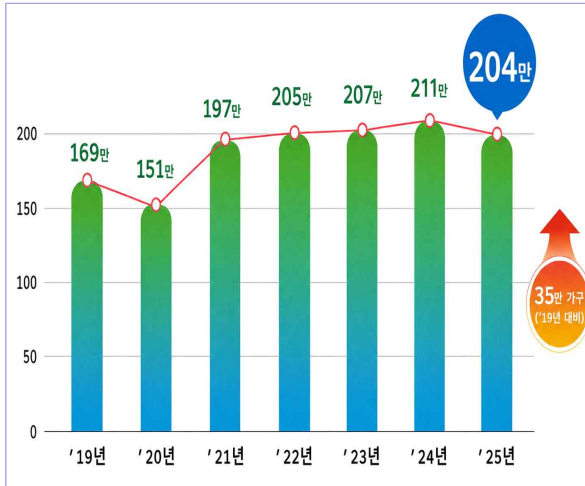
| 귀속 | 합 계 | | 근로장려금 | | 자녀장려금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
| | 가구 ¹⁾ | 금액 ²⁾ | 가구 | 금액 | 가구 | 금액 |
| '25년 | 204 | 23,620 | 191 | 22,008 | 13 | 1,612 |
| '24년 | 211 | 24,094 | 196 | 22,312 | 15 | 1,782 |
| 증감 | △7 | △474 | △5 | △304 | △2 | △170 |

1) 연간 반기분(상·하반기) 장려금은 상반기 및 하반기 중 한 번 이상 지급 받은 가구 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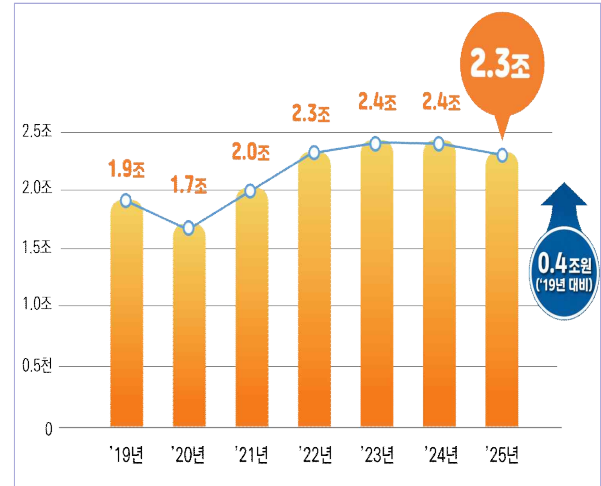
2) (근로) 상반기: 연간 산정액의 35% 지급, 하반기: 65% 지급, (자녀) 하반기 100% 지급

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연간 지급규모 】

| 지급가구 |



| 지급금액 |



참고 4 장려금 수령 및 심사결과 확인 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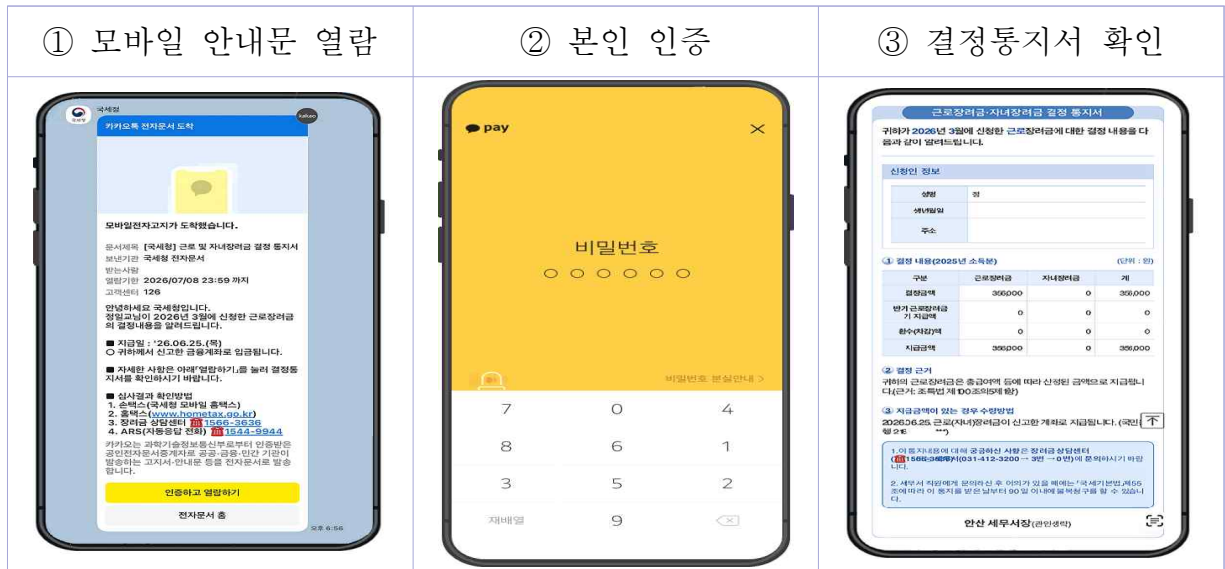
□ 수령 방법

- 예금계좌로 받고자 신청한 가구는 6월 25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된다.
- 현금 지급을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'국세환급금 통지서'와 본인의 '신분증'을 가져가면 우체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.
 - 대리인이 지급 받을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,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위임장을 가져가야 한다.
 -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홈택스(로그인 > 나의홈택스 >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> 우편물보기)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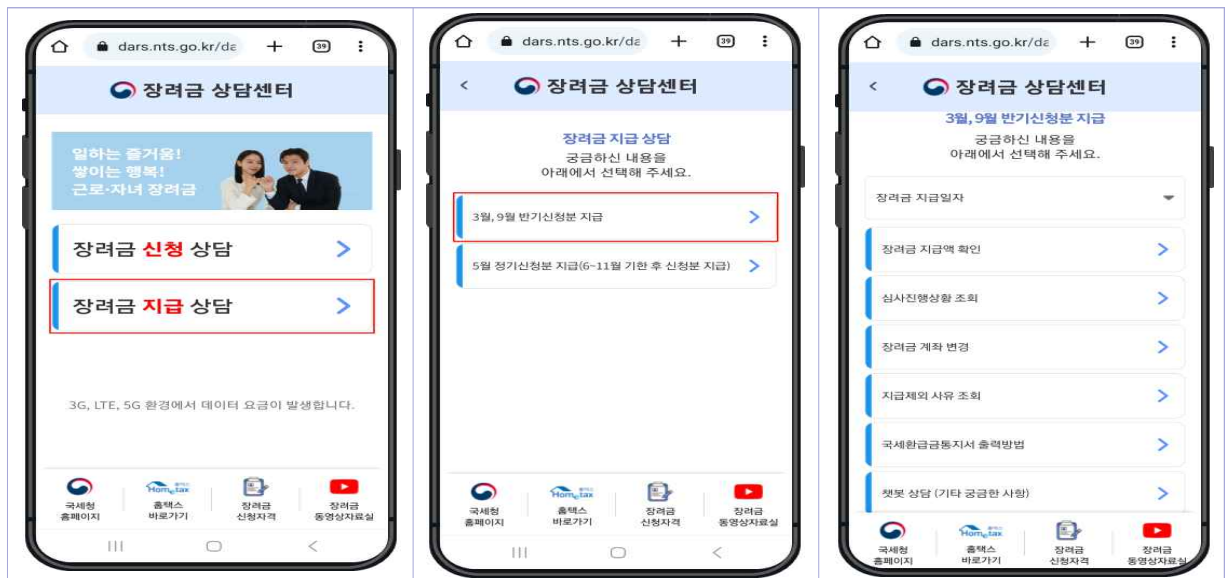
□ 심사결과 확인 방법

- 심사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(6월 25일)한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, 「장려금 상담센터」(☎1566-3636), 자동응답시스템 (☎1544-9944), 홈택스(모바일, PC)로도 확인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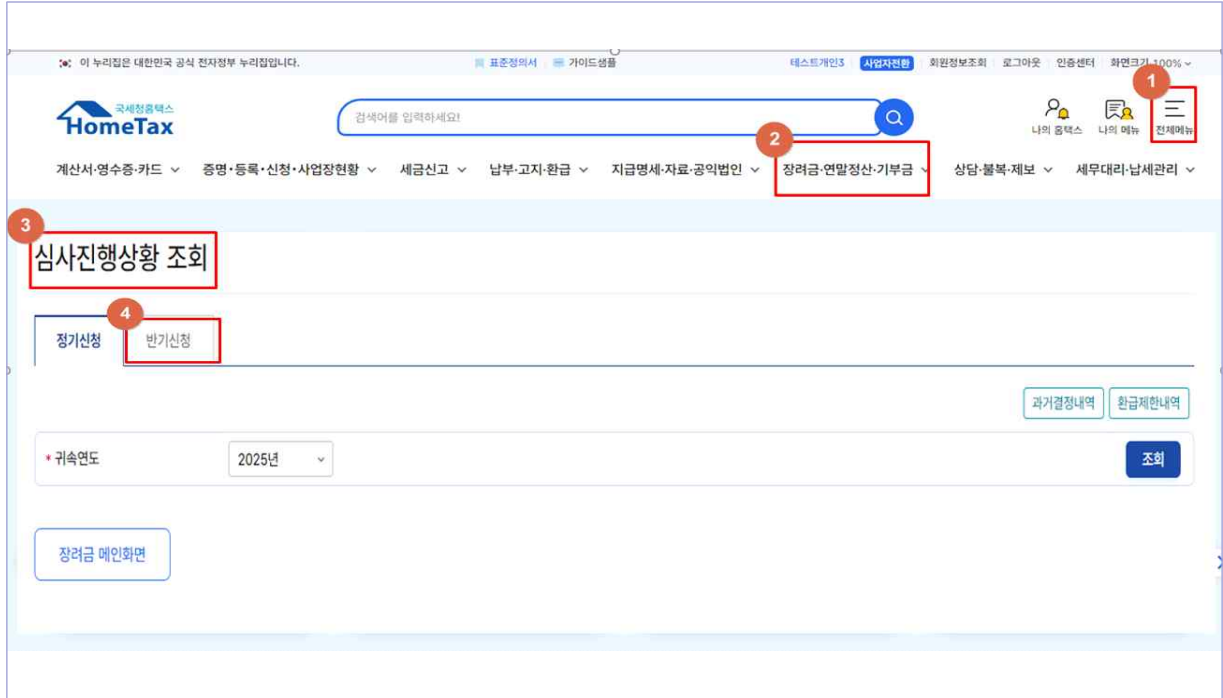
- 장려금 신청 시 결정통지서 전자송달에 동의한 자로서 계좌 수령으로 신청한 경우 심사결과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로 통지하고 있다.



- 장려금 상담센터는 6월 24일부터 7월 3일까지 확대 운영되며, 113명의 상담사가 반기지급과 관련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제공하고, 「보이는 자동응답」 기능을 제공하여 궁금한 사항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.



- 손택스(모바일 홈택스)를 이용할 때는 ① 전체메뉴(≡) → ② 장려금·연말정산·기부금 → ③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→ ④ '심사 진행상황'에서 확인할 수 있다.
- 홈택스(www.hometax.go.kr)를 이용할 때는 ① 전체메뉴(≡) → ② 장려금·연말정산·기부금 → ③ 심사 진행상황 → ④ '반기신청'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

참고 5 반기분 근로장려금 주요 문답 사례

사례 1 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누구인가요?

- ▶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(배우자 포함)만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, 이 경우 반기분과 정기분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.

사례 2 자녀 장려금 지급대상인 경우, 자녀장려금은 따로 신청해야 지급 받을 수 있나요?

- ▶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자녀장려금 대상일 경우 함께 지급합니다.
 -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,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,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.
 -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, 최소 50.6만 원 지급됩니다.

사례 3

반기분으로 신청하였는데 6월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?

- ▶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근로소득자가 **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**(사업소득·종교인소득 등)이 있는 경우(배우자 포함)에는 정기 신청(5월)한 것으로 보아 심사하여 8월 27일 지급합니다.

사례 4

사전안내 금액과 지급받은 금액이 다른 이유가 궁금합니다.

- ▶ 근로장려금 사전안내 금액과 지급금액이 다른 경우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발생합니다.
 - 심사 시, **지급요건 검토** 후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됩니다.
 - * (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지급제외)
 - 반기 신청의 경우, **수집 가능한 소득 발생연도의 전년도 기준 요건**(가구원, 재산, 총소득금액)에 의해 상반기분(25.12.)을 미리 지급한 후 하반기분(26.6.)에는 **소득 발생연도 기준 요건으로 정산***하면서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하게 됩니다.
 - * (추가지급) 연간 산정액 > 상반기 지급액 (환수) 연간 산정액 < 상반기 지급액
 - **국세 체납액**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% 한도 내에서 총당하고 지급합니다.

사례 5

신청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어떻게 받나요?

- ▶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 등이 **국세환급금 지급자 변경신청서**, 국세환급금 통지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※ 국세환급금 지급자 변경신청서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< 별표·서식 < 훈령서식 < 분야 : 징세 서식명 : 국세환급금 지급자 변경신청서(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6호 서식)

사례 6

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작년 12월에 받았는데, 이번 6월에는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. 왜 그런가요?

- ▶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1월~6월에 발생한 총급여액 등을 연간 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하고, 정산 시에는 '25년에 받은 실제 총급여액 등으로 장려금을 산정합니다.
 - '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시에 연간 금액으로 환산한 총급여액 등이 소득기준금액(단독가구 2천2백만원, 홑벌이가구 3천2백만원, 맞벌이가구 4천4백만원)을 충족하여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으셨으나,
 - 하반기분·정산 심사 결과, '25년 귀속 실제 총급여액 등이 기준금액을 충족하지 못할 시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없어 받으실 수 없으며, 연간산정액 보다 상반기에 지급한 금액이 많은 경우 차액을 환수하게 됩니다.

사례 7

환수통지서를 받았는데 환수 사유가 궁금해요?

- ▶ 정산 시 결정한 근로장려금 연간 산정액과 상반기분으로 이미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연간 산정액보다 상반기분으로 지급한 금액이 많으면 그 차액을 환수하게 됩니다.

※ 환수하는 경우 환수 순서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§100조의9⑦)

- ①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**자녀장려금**에서 차감
- ② ①에도 불구하고 환수 금액이 남은 경우, **다음 소득세 과세기간부터 10개 과세기간**의 근로·자녀장려금에서 차감
(다만, 본인이 납부 고지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소득세 납부 고지)
- ③ ②에도 불구하고 환수 금액이 남은 경우에는 환수 금액을 **소득세 납부 고지**

사례 8

하반기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?

- ▶ 근로장려금 연간산정액에서 상반기에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.
 - 상반기에 지급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 연간산정액(100%)를 지급합니다.
 - ※ 상반기분 심사 시 당해연도 재산 및 소득자료를 조기에 수집·반영하여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상반기에 지급(연간산정액의 35% 지급)하지 않고 정산 시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.

사례 9

작년 12월 반기신청하여 지급 받았는데, 다른 가구원이 정기분 장려금을 신청하면 저는 6월에 받지 못하나요?

- ▶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어 **1가구 내 수급자는 1명**입니다. 가구 내 둘 이상의 가구원이 신청한 경우, 아래의 수급자 판단 순서*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. 다만, 해당 거주자 간 합의하여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**합의로 정한 사람이 우선**합니다.

* 수급자 판단 순서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§100의7④)

- ①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
- ②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
- ③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
(단, 해당 거주자 간 합의로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로 정한 자)

사례 10

환수발생금액(또는 환수이월금액)을 지금 납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?

- ▶ 관할 세무서에 '근로장려금 환수 금액 고지요청서'를 제출하시면 납부하실 수 있는 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.

※ [홈택스(로그인) < 장려금·연말정산·기부금 < 심사 진행상황조회 < 반기조회 < 환수내역 < 고지요청서 접수 바로가기] 에서도 출력 및 온라인 접수 가능